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 미구성

기 관 명 부산광역시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확산방지 및 감염목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역방제대책본부는 지역재선충병 방제대책수립, 감염목 방제사업,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여, 1.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2. 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방제의 실시, 3. 그 밖에 지역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산림청지침)」 Ⅱ.방제조직 2.나.지역방제대책본부 규정에서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1.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는 관할구역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관리기관, 국방관련기관, 지역산림조합 및 민간단체의 장과 지역주민, 연접·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등으로 구성
2.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의 구성원은 재선충병 발생과 방제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예찰 및 협업방제 등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함
3.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등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인 부산광역시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소나무재선충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아래 【표】와 같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제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조속히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구 분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최초발생	2001	2000	2014	2007	1998	2005	1997	1993
청정지역 지정	2013	2011	-	2012	2011	-	-	-

구 분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최초발생	2000	1992	2001	2005	2001	1997	1997
청정지역 지정	-	-	-	2010	2011	2012	-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선충병방제지역 협의회를 구성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